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에 따라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사업의 구체적인 명시(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나. 예산조치 : '15 당초예산에 1억미만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5. 5. 28 ~ 6. 17)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사무 없음.

(4)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 6. 1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보조지원)에서 포괄적 보조지원 내용인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을 별표로 명시한 것으로 「숨은자원 모으기사업, 새마을공원 관리사업, 사랑의 김장담가주기사업, 문예지 발간사업, 새마을문고 운영사업, 한글학교 운영사업,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교육사업,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사업,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사업,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군수가 새마을 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15 당초예산에 1억미만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5. 5. 28 ~ 6. 17)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사무 없음.

(4)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 6. 1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포괄적 내용인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인 별표로 구체화하여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사업, 사회단체협의회 지역사회발전사업, 청소년 극기캠프교실, 청소년 안전문화 지도 활동사업, 역량강화 교육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범죄예방 선도 및 보호활동사업,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활동사업, 태극기 선양 및 각종사업, 찾아가는 마을봉사활동사업, 중고물품 교환판매소 운영사업」으로 신설 명시한 것입니다.

○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